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식품명인은 타인의 모범이 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, 전통식품 단체가 조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조성방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9. ~ 4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제18조”를 “같은 조 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취소된”을 “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)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(響應)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

2.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(誣告)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
3.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

제22조의2의 1항 중 “법 제14조제7항”을 “법 제14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4조제7항”을 “법 제14조제8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14조제10항”, “법 제14조제6항”, “취소”를 각각 “법 제14

조제11항”, 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”, “취소 또는 해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14조제10항”을 “법 제14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법 제14조제9항”을 “법 제14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9항”을 “법 제14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3(자조금의 조성방법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(이하 “자조금”이라 한다)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전통식품 등의 계승·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
2. 전통식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
3. 전통식품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·연구 등 지원사업
4. 전통식품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
5.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4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

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. 이 경우 자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.

2.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식품 등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

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 부속서 1가에 따른 「농업에 관한 협정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(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)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·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39조의2 중 “법 제14조제5항 및 제7항”을 “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.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<u>제18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	제16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같은 조 제7항----- -----.
제17조(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<u>취소된</u>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.	제17조(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취소되거나</u> <u>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</u> ----- -----.
<u>제18조(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해제)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</u> <u><신 설></u>	<u>제18조 <삭 제></u> <u>제19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</u>

	지)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1.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(響應)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.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(誣告)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.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
제22조(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) ① (생략)	제22조(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(이하 “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”라 한다)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법 제14조제10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2(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)	제22조의2(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)

① 법 제14조제7항에서 “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

1. ~ 2. (생략)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,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③ 법 제14조제10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제23조(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) ① 대한민국식품명

① 법 제14조제8항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법 제14조제8항-----

-----.

③ 법 제14조제11항-----
-----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-----
-----취소 또는 해제-----.

④ -----법 제14조제11항-----

-----.

제23조(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) ① -----

인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<신 설>

-----법 제14조제10항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3(자조금의 조성방법 등)

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(이하 “자조금”이라 한다)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전통식품 등의 계승·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

2. 전통식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

3. 전통식품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·연구 등 지원사업

4. 전통식품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

5.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

<신 설>

항 외에 자조금 조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.

제24조의4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. 이 경우 자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.

2.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 식품 등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

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 부속서 1가에 따른 「농업에 관한 협정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(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)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·감독을 위하

제39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·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
한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
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
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39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-----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2134